

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30일
신 청 기 관	명 칭		전 화 번 호	
	대 표 자 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비상진료기관의 종류				
위와 같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9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				
첨부서류 1.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2. 방사선비상진료시설,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3부		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